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2005. 8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2005. 8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에 부쳐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입니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주요 교역국들과 동시에 발달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무역자유화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7대 수출국가인 싱가포르는 교역규모가 크고 서비스·금융·물류 등 산업 전반이 두루 발달한 통상국가입니다. 이를 감안해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 분야의 교역 확대 이외에도 서비스 산업의 상호진출을 보장하고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5년 8월 4일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한·싱가포르 FTA는 그간 교섭을 맡은 정부의 손을 떠나 무역인, 소비자, 농업인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 등 우리 국민 각계각층에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싱가포르 FTA가 제공해주는 기회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책자에서는 협정의 주요 내용을 가급적 쉬운 용어로 상세히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싱가포르 FTA의 혜택을 널리 향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8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현 종

大ト 韶

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9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1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17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20
전 문	20
제1장 일반조항	21
제2장 일반적 정의	22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22
제4장 원산지 규칙	23
제5장 통관절차	27
제6장 무역구제	31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33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33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36
제10장 투자	37
제11장 전기통신	39
제12장 금융서비스	41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42
제14장 전자상거래	42
제15장 경쟁	43
제16장 정부조달	44

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45
제18장 협력	46
제19장 투명성	47
제20장 분쟁해결	48
제21장 예외	48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49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50

III.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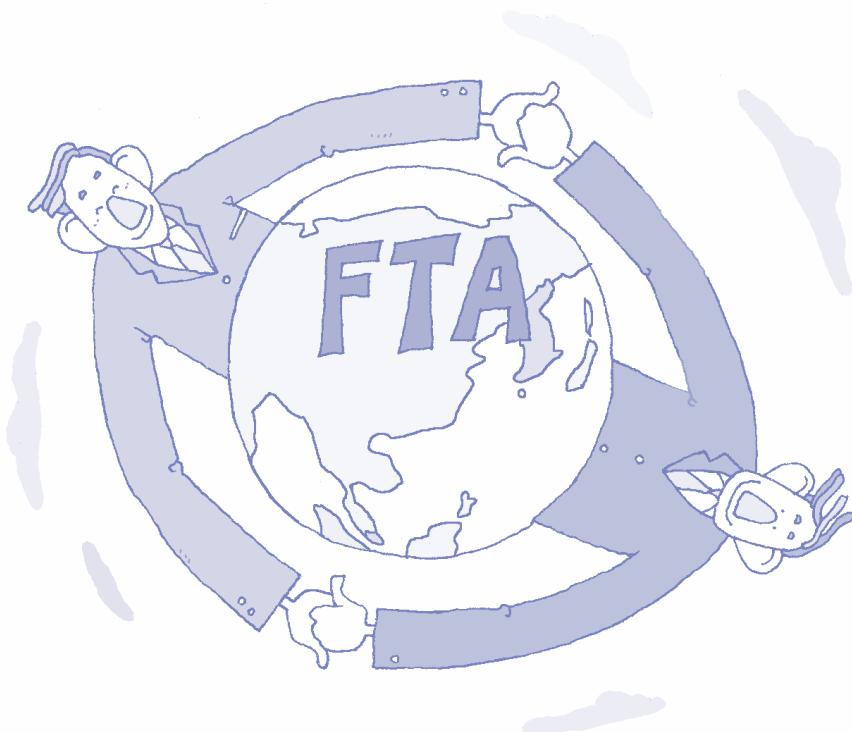
1. 싱가포르 소개	55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62

표 차례

표 II-1. 우리나라의 상품양허안 개요	50
표 II-2. 한·싱가포르 양국의 서비스·투자 양허안 개요	52
표 III-1.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55
표 III-2. 세계 주요 항만의 2004년 컨테이너 물동량(추정)	58
표 III-3. 싱가포르의 FTA 체결 및 협상추진 현황(2005년 6월 현재)	61
표 III-4. 한국의 对싱가포르 수출입 추이(1995~2004년)	62
표 III-5. 한국의 对싱가포르 품목별 수출입구조 (2004년 MTI 4단위 기준)	63
표 III-6. 한국의 对싱가포르 투자 현황(신고기준, 2005년 5월)	64
표 III-7. 싱가포르의 对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2005년 3월)	65

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 한·싱가포르간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고속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 이어 2002년 11월 시드니 WTO 소규모 각료회의 기간 중 개최된 양국간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연구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

- 공동연구회의 이러한 권고에 기초하여 양국 정상은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 그 후 협정문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4월에는 협정문이 가서명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우리측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싱가포르측 Lim Hng Kiang 통상산업부 장관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 추진경과 |

- 1999년 9월 : APEC 정상회담에서 고속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 제안
- 2002년 11월 : 시드니 WTO 각료회의에서 한·싱가포르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 핍의
 - 2003년 3월 : 제1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 2003년 7월 : 제2차 공동연구회 개최(싱가포르)
 - 2003년 9월 : 제3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 2003년 10월 :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 2003년 10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년 1월 :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년 3월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4년 5월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년 7월 :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 2004년 9월 :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년 10월 : 실무협의 개최(싱가포르)
 - 2004년 10월 :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년 11월 : 실무협의(Teleconference)
 - 2004년 11월 : 칠레 APEC 정상회담 및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쟁점 협의
- 2004년 11월 :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2005년 4월 : 협정문 가서명(싱가포르)
- 2005년 8월 4일 : 협정문 정식서명(서울)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가.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이다.
 -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對韓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 한·싱가포르 FTA는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FTA가 되었다.
 -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양국이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되게 되었다.
 -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된 ASEAN*과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로써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 **ASEAN(Associations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7년 창설된 동남아국가연합으로 현재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음.

* **ASEAN과의 FTA 협상** :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2005년도부터 2년간 원료를 목표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함.

다.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원활화

- 한·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 또한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
-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들로 북한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도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우리 정부의 FTA 전략

- 1)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 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보완할 수 있도록 함.
- 2)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 3)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함.
- 4)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함.

II

한 · 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전문(前文)과 본문 22개 장, 그리고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600여 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칙, 원산지증명서 서식,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문

□ 제1장 : 일반조항

□ 제2장 : 일반적 정의

□ 제3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 관세철폐계획

□ 제4장 원산지 규칙

-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기준

- 부속서 : 4.3조(개성공단관련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부속서 : 4.4조(역외가공)에서 규정된 상품

□ 제5장 : 통관절차

-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부속서 :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관세접촉선

□ 제6장 : 무역구제

□ 제7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8장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 부속서 :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 제9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 현재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제9장(국경간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 부속서 : 전문직 서비스

□ 제10장 : 투자

□ 제11장 : 전기통신

□ 제12장 : 금융서비스

- 부속서 : 구체적 약속

- 부속서 : 금융서비스활동

- 제13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 기업인의 일시입국
- 제14장 : 전자상거래
- 제15장 : 경쟁
- 제16장 : 정부조달
 - 부속서 : 정부조달 범위
 - 부속서 : 정부조달 이행
- 제17장 : 지적재산권
- 제18장 : 협력
 - 부속서 : 협력(세부분야별 협력)
- 제19장 : 투명성
- 제20장 : 분쟁해결
 - 부속서 : 모범 절차규칙
- 제21장 : 예외
- 제22장 : 행정 및 최종조항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 양국은 전문(前文)에서 양국간에 형성되어 있는 오랜 우호관계와 확고한 무역 및 투자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할 것을 선언하였다.
 - 양국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고용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며, 양국의 기업 및 아시아내 여타 기업을 위한 경제활동에 투명성을 증진할 것임.
 - 양국간 FTA가 자본 및 인적자원에 대한 유인을 향상시키고, 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것임.
 - 아시아에서 열린 시장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함.
 -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협력의 확립을 통해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진흥하고 지역적 무역통합의 혜택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함.
- 양국은 이밖에 FTA 체결에 있어서 WTO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고 그밖의 다자, 양자 및 지역적 협력체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제1장 : 일반조항

- 본 장은 FTA 협정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와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 한·싱가포르 FTA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 상호간 무역 및 투자의 확대와 자유화 촉진
-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 구축
- 공정경쟁의 조건 보장, 무역과 투자를 규율하는 틀 마련
- 협정의 이행·적용 및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 지역 및 다자간 협력의 틀 확립 등

- 양국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WTO 협정을 포함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정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였다(제1.3조).

- 또한 FTA 협정이 다른 협정과 상충할 경우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상호 상충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제1.3조 제3항).

제2장 : 일반정의

- 본장은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미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가. 개요

- 싱가포르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한국은 모든 상품의 91.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밖에 본장은 비관세장벽 철폐 등도 규정하고 있다.
 - 협정문은 내국민대우,* 관세철폐, 수출관세, 수선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문제, 수입 및 수출 제한, 세관사용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장과 관련된 부속서에는 양국의 상품 관세철폐계획(양허표)을 담고 있다.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으로서 GATT의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나. 조항별 주요 내용

-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해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였다(제3.3조).
- 부속서에 포함된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기타 수입제세 및 수입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제3.4조).

* 양허표의 상세내용은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참조

- 또한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은 관세철폐의 가속화 또는 미양허품목의 양허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기로 하였다.

■ WTO 협정 또는 FTA 협정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관련 제한(비관세장벽*) 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3.8조).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수입수량 제한, 통관절차상의 제한, 기술장벽 등 정부 가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자유화를 제한하는 각종 조치

■ 양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금지하였다(제3.6조).

■ 세관사용자 수수료는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목적상 수출입상품에 대한 일종의 조세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 액수는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 내로 한정하도록 하였다(제3.9조).

제4장 : 원산지 규칙

(1) 원산지 규칙이란?

- 일반적으로 '원산지' 라 함은 어떤 제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즉 제품이 태어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산지규칙(rules of origin)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그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뉘어짐.
 -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을 통해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하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등 관세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함.

(2)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

- 원산지의 판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음.
 - "완전생산기준"이란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한 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농수산물이 이 경우에 해당됨.
 - 그러나 실제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의 경우 생산과정이 수개 국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완전생산기준만으로는 원산지를 결정하기가 힘들게 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 생산과정, 즉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기준을 실질적 변형기준이라 함.
- 그런데 실질적 변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 실질적 변형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실질적 변형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됨. 이러한 이유로 보통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기준을 따로 적용하거나 몇 개의 기준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게 됨.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최종생산과정을 거친 원제품의 稅番(tariff classification)이 그 원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세번과 달라졌을 경우, 이러한 세번의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임. 이때 세번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품목번호를 사용함.
 -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 : 원제품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함.
 -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상품에 따라서는 특정한 제조공정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특정한 제조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이러한 기준을 특정가공공정기준이라 부름.

(2) 보충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 FTA에서 포함되는 원산지 규정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규정 외에도 미소기준, 누적규정, 불인정공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보완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사용됨.
 - 최소허용수준(de minimus, 미소기준) :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데, 10% 내외의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누적규정(cumulation rule) :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국내산이 아닌 FTA 대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에 그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특혜관세를 받기가 쉽도록 해주는 규정임.
 -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 가축의 도축처럼 형식적으로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힘든 최소가공만을 거친 경우, 그러한 가공이 행해진 국가의 원산지로는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말함.

가. 개요

-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은 싱가포르가 재수출 비중이 높은 중계무역 국가임을 감안하여 비교적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였다.
- 협정문은 원산지상품, 특정상품(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취급, 역외가공, 역내가치 포함비율, 중간재, 중립요소, 누적계산, 최소허용수준, 대체가능상품 및 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재료 및 용기, 직접운송, 불인정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속서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성공단 등 관련 상품, 역외가공 관련 상품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산지기준 기본원칙

- 우선 완전생산기준으로 ① 양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광물, ②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③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의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제4.1조).
- 실질적 변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세번변경기준과 조합하여 혹은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법(build-down method) 계산에 따라, 전반적으로 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제4.5조).

$$RVC = \frac{(CV-VNM)}{CV} \times 100$$

- CV(Customs Value) :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

* 관세가격 : WTO 관세평기협정에 따라 상품판매자의 거래시 상품·재료 구입가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 **FOB(Free On Board) 가격** : 수출품을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본선까지 인도하기 전까지의 가격으로 수입국의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

* **공제법** : 조정된 관세가격에서 역외산 재료비를 차감한 후 이를 다시 조정된 관세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역내산 재료비를 조정된 관세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인 직접법과 구별됨.

다. 원산지기준 보충원칙 및 특례

■ 원산지기준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 누적 규정, 불인정공정, 직접운송,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소기준의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섬유제품의 경우 8%)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제4.10조).
- 농·수산물의 경우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미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가공 농·수산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 누적규정에 따라,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된다(제4.9조).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최소가공 또는 불인정공정을 다양하게 예시하였는데, 건조·냉동 등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 상표 부착, 분해, 포장의 변경, 단순 혼합, 단순 조립, 시험 또는 측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제4.16조).

■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면적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HS 10단위 134개)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역외가공을 인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제4.4조).

*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 역내생산(1단계) → 역외가공(2단계) → 재수입 후 역내 최종생산(3단계)과 같은 생산단계에서 이전의 역내부기기(1단계)를 역외가공 이후의 역내 부가기(3단계)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가 관세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하며,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가공을 통하여 생산될 것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역외가공에 의한 원산지가 인정된다.

■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또는 한반도의 여타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으로 양해되는 제품(HS 6단위 4,625개*)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실이다(제4.3조).

* 농산물 등 원전생산품, 예술품 및 골동품 등 개성공단 등 남북합작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없거나 생산시에도 수출 가능성이 없는 품목 등을 제외한 전 품목이며, 추후 3개월 이전의 통보로 품목 추가도 가능하도록 규정

제5장 통관절차

가. 개요

■ 제5장은 수출입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의무와 당사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협정문은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신청, 수출관련의무,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원산지 사전판정, 관세협력, 관세접촉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양국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관세접촉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의 일부로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 협정관세적용신청서(Declaration for Preference) :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신청서를 말하는데,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증명서 등에 기초하여야 함.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수출당사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5.2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한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세관 및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된다.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각 증명서는 1회 수입에 한한다.

* 원산지증명서 :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출 상품에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양식을 말함.

다. 원산지 검증

■ 양국의 세관당국은 원산지 검증, 즉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5.7조).



우리의 수출기지인 부산항만

- 서면으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수출업자나 생산자는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세관당국은 또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상품 생산 관련 기록 검토, 시설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5.7조).

-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상대방 국가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대방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사전에 방문의사를 통보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라.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 양국은 다음의 경우에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

- 신고된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수출입자 및 생산자의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미제출하거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원산지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선적되거나 환적된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거나 여타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역외가공을 거친 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칙)의 역외가공 관련 조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규정

- 수출업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5.5조).
- 물품의 통관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고 수출입업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이 어느 HS 번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원산지국은 어느 나라가 되는지, 또는 관세평가협정*의 적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여타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수출입업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관세행정당국이 미리 이를 판정해 주는 사전판정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도록 하였다(제5.8조).

* **WTO 관세평가협정(Custom Valuation Agreement)** :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정식 명칭임. WTO 협정의 일부로서 회원국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수입물품의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을 정한 협정임.

* **사전판정제도(Advanced ruling)** : 수입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세관당국으로부터 미리 원산지가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원산지 결정 또는 사전판정에 대해 수출입업자는 검토 및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제5.11조).
- 수출입업자가 원산지증명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상 또는 행정적 벌칙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12조).
- 상품의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품의 총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5.6조).
- 양국은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원산지 검증, 서류 없는 통관절차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화,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정보교환, 최적 관행에 대한 정보공유, 세관의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하였다(제5.13조).

* **위험관리기법** : 세관 당국이 수입신고서와 심사대상인 수입물품을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자료 처리방법

- 양국은 제5장 통관절차와 제4장 원산지 규칙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관세접촉선(Customs Contact Point)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제6장 : 무역구제

- 양국은 WTO 및 GATT 1994 규정 등 WTO 협정상의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제20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2조).

- 단 반덤핑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 반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양의 값이든 부의 값이든 평균계산에 포함하도록 하였고(소위 “zeroing” 관행의 금지), (2)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소위 “lesser duty” 규칙)을 채택하였다.

* **무역구제 (trade remedies)** :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반덤핑조치 · 상계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음.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 : 상대방 국가의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를 “덤핑”이라 함)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동 가격치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함. WTO 반덤핑 협정은 가격차이의 측정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양국은 WTO 및 GATT 규정 등 WTO 협정상의 상계조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 역시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제20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3조).

*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 :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 이러한 정부보조금에 대항하여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함.

■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상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실질적(substantial) 원인이 될 경우, 수입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양자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6.4조)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당해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 이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하던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2)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둘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대 발동기간은 2년이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 한편 이러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다자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기준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6.5조).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로 SPS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로 약속하였다(제7.1조).

* **SPS 조치** : 동·식물 병해충, 식품첨가제, 오염물질 등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WTO 협정으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있음.

- 따라서 SPS 조치는 “WTO SPS 협정”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다.
- SPS 조치에 관련하여 양국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 합리적 기간내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 양국은 접촉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서로 긴밀히 연락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1조).
 - 담당기관 : 한국(농림부), 싱가포르(농산식품수의청)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가. 개요

- 양국이 상대국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적합성평가 등을 상호인정하는 근

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에 수반되는 적합성 평가기관 등록, 검증, 이의제기 등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 국가간에 서로 다른 표준화절차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제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 또는 이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를 말함

* **적합성평가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 상대방 국가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제조공정이 자국의 기술표준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시험결과 증명서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이라 함.

■ 협정문은 적용범위 및 방식, 정의, 원산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비밀유지, TBT 공동위원회, 규제권한의 보유, 분야별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조항별 주요 내용

■ 본 장의 목적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WTO TBT 협정)의 완전한 이행, 당사국의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간 무역증대에 있다(제8.1조).

- 양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예: 상대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는 방식, 상대방국가의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절차, 물품의 공급자에 의한 적합성 선언 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제8.2조).

- 양국은 WTO TBT 협정과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내용 등에 규정된 국제표준이나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제8.2조).

■ 본 장의 적용범위로는 양국간 상품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및 제조업자·제조공정의 평

가 등이 해당된다(제8.2조).

- 양국은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정,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평가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의 활용과 같은 시장 접근 촉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상대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적합성인증서와 마크 포함)를 서로 수용하기로 약속하였다(제8.5조).

- 부속서 및 부속서한에 따라 전기통신기기 및 전기전자장비분야를 이러한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대상분야로 정하였다.

- “전기통신기기” 분야는 APEC 전기통신 및 정보작업반의 상호인정 규정(시험성적서 및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증서의 상호인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전기 및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호인정 관련 세부내용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협정 발효 이후 첫 번째 검討 회의 전까지 종결키로 합의하였다.

- 본 장에는 이러한 원칙과 함께,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수반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검증, 지정정지, 이의제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 양국은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역량 등을 상대국에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되, 법 집행에 방해가 되거나 공공이익 또는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 등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제8.6조).

■ 양국은 본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책임기관으로 “TBT 공동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제8.7조).

■ 끝으로 양국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과 관련하여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이행할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제8.8조).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가. 개요

-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도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여 양국간 서비스가 자유롭게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 협정문은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불합치조치, 추가약속, 미래자유화, 절차, 인정, 국내 규제, 혜택의 거부,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유보의 수정 또는 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속서로는 현재의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미래의 조치에 대한 유보, 추가적인 약속, 전문직 서비스 등이 있다.

나. 조항별 주요 내용

- 상업적 주제에 따른 서비스 공급(제10장 “투자” 적용)을 제외한 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그러나 금융서비스(제12장에서 별도로 규정), 정부조달, 정부지원 응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비상업적 형태의 공공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9.2조).
-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9.3조, 제9.4조, 제9.5조).

* **현지 주재(local presence)**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기업 등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

*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수량할당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서비스 운용의 총 수, 고용인원 수 등을 제한하는 조치

-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불합치조치)는 부속서에 명기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9.6조).
 - 불합치조치에 대한 부속서는 크게 현재의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부속서 9A)와 미래의 조치에 대한 유보(부속서 9B)로 나누어지는 데, 현행 불합치조치(부속서 9A)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정에 불일치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기준 등과 관련하여, 상대국에서 습득한 교육·경험이나 면허·증명 등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9.10조).
 - 특히 부속서(9D)를 통해 전문직 엔지니어들이 상대국에서 사업기회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 싱가포르의 2개 대학을 전문직 엔지니어 대학으로 승인하고, 싱가포르는 한국의 20개 대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은 전문직 엔지니어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 아울러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조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시행될 것을 의무화하였다(제9.11조).

제10장 투자

가. 개요

- 양국은 상대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양국간 투자를 저해하는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직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여 양국간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협정문은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저기준,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불합치조치, 미래의 자유화, 송금, 긴급제한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 및 보상, 대위변제, 당사국과 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 :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수출토록 하거나, 외화획득을 하도록 하거나, 국산품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하도록 조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나. 조항별 주요 내용

- 투자는 기업, 주식, 채권, 계약상의 권리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 협정 발효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뿐 아니라,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투자도 이 협정에 의하여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였다(제10.2조).
- 이미 이루어진 투자뿐만 아니라 설립 전 단계부터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0.4조, 제10.7조).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고,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0.8조).
-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불합치조치)는 부속서에 명기하여 협정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10.9조).
 - 제9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불합치조치에 대한 부속서는 크게 현재의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부속서 9A)와 미래의 조치에 대한 유보(부속서 9B)로 나누어지며, 현행 불합치조치(부속서 9A)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정에 불일치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환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록 보장하되, 채권자 보호, 범죄행위, 소송에 따른 판결결과이행 등을 이유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11조).

-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12조).
-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13조).
- 투자자와 상대국 정부 사이에 투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 투자분쟁해결제도를 적용토록 하였다(제10.19조).

제11장 전기통신

- 양국은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하에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제11.3조).
 - 단 이러한 접근은 통신보안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와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의 기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였다(제11.4조).
 -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의 접속 및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 **지배적 사업자** :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및 시장지위 등을 남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말함.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자국에서 허가받은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행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반경쟁적 결과의 초래 등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교차보조 (cross subsidization)**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신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자국에서 허가받은 상대국 사업자에게 국내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망 공동활용,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상호접속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것.

■ 양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독립적이며,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것을 보장하였다(제11.5조).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가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11.6조).

* **보편적 서비스** : 산간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함.

■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경우, 허가 기준 및 절차, 조건, 소요기간 등을 공개하고, 허가 거부시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 거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제11.7조).

■ 국내 전기통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전기통신 규제기관 등에 심판을 청구하고, 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또는 독립적인 사법 및 행정당국에 항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제11.10조).

제12장 : 금융서비스

■ 양국간 금융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상대국의 금융기관,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의 투자자 및 당해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사항으로 하였다(제12.1조).

- 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 업종은 보험업을 포함하여 대부업, 증권업, 투신업, 자금중개 등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와 이에 부수되거나 부속적인 서비스로 제12장의 부록에 명기된 업종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자유화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소위 “Negative” 방식을 취하였으나, 금융서비스에서는 개방대상 업종을 기재하는 “Positive” 방식을 채택하였다.

■ 양국간 금융서비스 교역에 있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규제 투명성, 정보비공개,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금융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2.13조).

■ 통화, 환율 및 금융제도 등 정책과 관련된 사항과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취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제12장의 적용을 배제하였다(제12.6조).

■ 양국은 본 장의 이행과 발전에 대한 감독, 일방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금융서비스문제의 검토,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참여 등을 위해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제12.10조).

■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양국은 상호협의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때에는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패널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양국은 투자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공중보건, 안전 및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업인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 전근자(상사주재원)”에 대하여 일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부속서13A, 부록13A.1).

- 기업인 방문자 : 90일까지 체류(연장가능)
- 무역업자 및 투자자 : 2년까지 체류(연장가능)
- 기업 내 전근자(상사주재원) : 2년까지 체류(연장가능)

■ 제13장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한하여 적용되며, 고용을 위한 입국이나 영주의 의사를 지닌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2조).

■ 협정에 따른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경의 보전 및 출·입국 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로서 기업인의 입국 또는 일시체류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13.3조).

■ 상대국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진행 중인 노동분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기업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4조).

제14장 : 전자상거래

■ 전자적 전송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되는 디지털 제품*에는 관세, 세금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을 수록한 전달매체*는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제14.4조).

- 또한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 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를 규정하였다.

■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공급은 제9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투자), 제12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된 조치에 부합되어야 한다(제14.3조).

* **디지털 제품** :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 문자열 · 동영상 · 이미지 · 녹음 또는 그밖의 제품(디지털화된 금융상품은 제외)을 말함.

* **전달매체** : 현재 통용되는 광매체, 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개발될 새로운 방식까지 포함함.

제15장 경쟁

■ 양국은 국내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에 노력하고 상호협력으로 하였다(제15.1조, 제15.2조).

* **반경쟁적 관행** : 경쟁사업자간 반경쟁적인 수평적 합의, 시장지배력의 남용, 사업자간 반경쟁적인 수직적 합의 그리고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을 포함함.

■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등록 또는 설립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할 것임을 보장하고,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치는 투명성 · 적시성 ·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에 입각하도록 하였다(제15.3조).

■ 비상업적 활동이 아닌 한 정부 소유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영업활동에 있어 경쟁적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제15.4조).

■ 양국은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국내 경쟁 관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양국 경쟁당국간 협력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5조).

제16장 정부조달

■ 양국은 정부조달에 있어 내국민대우,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WTO 정부조달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 양자간 무역기

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제16.1조).

*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상품·서비스·건설 구매에 있어 절차와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WTO 다자규범임. 가입한 회원국만 적용을 받는 WTO 복수국간 무역 협정의 하나로 우리나라 1997년 동 협정에 가입하였음.

- 계약대상가액 산정,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원산지 규정, 입찰절차, 이의신청, 협정에 대한 예외 등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제16.3조).
- 입찰기회와 관련하여 투명성 및 비차별 원칙을 존중하고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전자적 통신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자국의 정부전자조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및 상호지원하도록 하였다(제16.5조).
-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기관을 우리측 재정경제부와 싱가포르측 재무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6.9조).
- 양허대상기관으로 한국의 경우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인 43개 중앙정부기관, 15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국한), 19개 투자기관을, 싱가포르는 23개 국가기관, 24개 기타 기관을 지정하였다(부록16A.1).
- 양허하한선은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양국 모두 물품과 서비스는 10만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로 하였다(부록16A.1양허표1).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물품과 서비스는 20만SDR, 건설서비스는 1,500만SDR이다(부록16A.1양허표2).

*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 IMF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1SDR은 약 1.5미달러에 해당

* 양국 모두 중앙정부기관 물품 및 서비스 관련 WTO/GTPA상의 양허하한선(13만SDR)을 10만SDR로 인하함으로써 정부조달시장을 추가 개방

- 투자 및 기타 기관에서 물품은 양국 모두 40만SDR이나 서비스는 한국은 미개방인 반면 싱가포르는 40만SDR이며, 건설서비스는 한국은 1,500만 SDR, 싱가포르는 500만SDR이다(부록16A.1양허표2).

■ 한국은 중소기업보호정책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부록16A.1).

- 정부조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부분도 예외로 인정하였다.

■ 한국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싱가포르는 정부조달중재위원회를 분쟁 해결기관으로 지정하였다(부록16B.2).

제17장 지적재산권

■ 양국은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였다(제17.2조).

*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수단을 명기한 다자규범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됨.

■ TRIPS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4조).

■ 양국은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의 지적재산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적재산분야의 교육훈련과 워크숍,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제17.5조).

-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가 출원된 경우, 싱가포르는 특허협력조약(PCT) 하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을 지정하고 특허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제17.6조).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과 동일한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제17.7조).
 -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는 싱가포르에서 실체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양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당사국 협력에 대한 검토, 평가, 권리 및 새로운 협력분야의 발굴 등을 위해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제17.9조).

제18장 협력

- 양국은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진흥, 방송, 환경,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제18.1조).
- 정보통신기술 관련, 양국간 정책문제에 관한 대화와 민간부문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제3시장에서의 사업기회 확대 및 ICT 전문가 자격증의 상호인증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제18.2조).
- 전자상거래 협력 관련 양국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교육훈련활동에서의 협력, 전자증명서 상호인정, 양국 업계에서의 전자증명서 상호 호환성 등을 권장하기로 하였다(제18.3조).
- 과학기술부문은 생명공학·나노기술·전자공학·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며, 과학자·연구원의 상호교류,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제18.4조).

■ 무역 및 투자의 진흥을 위하여, 양국은 민간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로 노력하며, 무역 및 투자활동을 진흥하는데 협력키로 하고, 상세내용을 부속서에 규정하였다(제18.6조).

- 우리 KOTRA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간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연계 등에 대하여 협력키로 합의하였다(부속서 8A제1절).

■ 방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권장하고, 상세내용을 부속서에 규정하였다(제18.8조).

- 방송위원회(KBC)와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간 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 방송 등 방송정책 관련 의견교환, 싱가포르 내에서의 우리나라 텔레비전 채널 재송신 등에 대해 협력키로 하였다(부속서 8A제1절).

■ 환경부문의 협력에 있어, 압축천연가스(CNG) 기술 및 환경보호의 응용분야에 대하여 양국 관련 단체 및 산업계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제18.9조).

■ 영화제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KOIEC)와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간 약정을 체결하여 영화 공동제작 및 배급 등을 지원·장려키로 하였다(부속서 8A제4절).

제19장 투명성

■ 양국은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며, 이를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제19.2조).

■ 양국은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상대국에 통보하고, 상대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답변하기로 약속하였다(제19.3조, 제19.4조).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하였다(제19.5조).

제20장 분쟁해결

- 원칙적으로 협정과 관련된 분쟁은 모두 제20장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는데(제20.2조), 동일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WTO 협정에 모두 적용될 경우, 제소국은 두 분쟁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제20.3조).
- 분쟁해결은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 만약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제3자에 의한 주선·화해 및 중개 절차를 맍을 수도 있다.
- 중재패널은 분쟁사안에 대한 협의요청 접수 후 45일 이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된다(제20.6조).
 - 패널위원은 양 당사국에서 1인씩 지명하고, 합의로 의장 1인을 임명하는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양 당사국이 제출한 후보군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제20.7조).
 - 중재패널은 설치 90일 후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재청취하고, 최초보고서 제출 30일 경과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제20.11조, 제20.12조).
-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이행수단을 확보하였다(제20.14조).

제21장 예외

- 이 협정은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를 인정하며 당사국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정보제공 거부, 필수적인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위한 조

치 등 국가안보상의 예외를 인정하였다(제21.2조, 제21.3조).

*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 WTO 회원국이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WTO 상의 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를 일반적 예외라고 지칭함.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과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국이 당사국인 조세협정 하에서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제21.4조).
 - 다만 제3장의 내국민대우, 제10장의 수용 및 보상, 당사국과 상대국간의 분쟁해결조항은 당사국의 과세조치에도 일부 적용된다.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 이 협정은 양국이 비준 등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 후, 30일 이후에 발효되도록 하였다(제22.5조).
- 양국은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적절한 시기에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제22.1조).
- 양국간 합의로 협정의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된 협정의 발효는 양국이 합의한 일자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2.4조).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가. 상품양허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품무역에 있어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 싱가포르는 현재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행관세를

표 II-1.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개요

(단위: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

구 분	품목 수 (비율)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 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제분용 밀, 사탕무 · 수수, 팜유 등	연어, 홍합, 냉동 해조류 등	석재류, 원목, 단판 등
5년 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 등 유기화학품,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릿 등	염장품, 통조림 등	대바구니, 부채살 등
10년 철폐	1,582 (14.1)	염화수소, 염화암모늄, 포름산 등의 유기화학품, 전동기 등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인삼, 주류 등	고등어 · 대구 등 일부 냉동품, 쥐치포 등	제재목, 성형목재, 파레트 등
소계 (10년내 철폐)	10,315 (91.6)	-	-	-	-
양허 제외	946 (8.4)	휘발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 등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 등	양식용 활어 및 패류, 열대관상어 등	합판, 섬유판 등
계	11,261 (100)	-	-	-	-

부과 중이다.

- 우리나라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 양허안은 공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최대 10년내 철폐하고,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제외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양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對싱가포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실행관세율이 이미 대부분 무세

나. 서비스 · 투자

■ 양국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하였다.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권리를 부여하고 국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FTA 체결로 해외시장 개척

- 비구속적인 수량제한*(QR) 조항을 두고 있는 한·칠레 FTA와는 달리,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구속적인 시장접근*(MA) 조항을 포함하였다.

* **비구속적인 수량제한** :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적 제한조치(서비스 공급자수 제한, 총 매출 제한 등)에 대해 철폐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을 말함.

* **구속적인 시장접근** :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제한조치에 대해 유보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철폐의무를 부과하되, 상업적 주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또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현지주재의무 부과를 금지하였다.
- 투자촉진을 위하여 상대국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서비스·투자 분야의 양허 현황
 - 회계사, 변리사 등의 서비스 제공 제한, 스크린쿼터,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방송·전력·우편·도박·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제외한 기존 서비스시장의 개방범위 내에서 양허하였다.

표 II-2. 한·싱가포르 양국의 서비스·투자 양허안 개요

	현재유보(Annex 9A)	미래유보(Annex 9B)
우리나라 (총 81건)	회계, 세무, 변리사,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스크린쿼터, 운송서비스에 대한 제한, 기본통신사업 지분제한, 지방정부조치 등 50건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거래 제한,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방송, 전력, 우편, 도박, 법률,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등 31건
싱가포르 (총 64건)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제한 등 34건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

- * 서비스 및 투자 양허방식(Negative 방식) : 부속서(Annex I, II)에 기재된 정부 조치 또는 서비스 분야 이외에 모든 조치 및 분야는 협정상의 의무 부담
- 현재유보(Annex 9A) : 서비스협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협정 정부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협정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
- 미래유보(Annex 9B) : 서비스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협정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

III

싱가포르는 어떤한
나라인가?



III.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1

싱가포르 소개

가. 작지만 강한 나라

■ 싱가포르는 소규모의 도시형 국가지만, 1인당 GDP는 25,192달러에 이르는 경제강국이다.

- 2004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인구는 424만 명, 면적 697.1km²(서울시 605.5km²), GDP 1,068억 달러, 연간 교역액은 3,354억 달러에 달한다.

표 III-1.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추정)
GDP(명목)	십억 달러	86.0	88.3	92.3	106.8	116.6
실질GDP증가율	%	-2.0	3.2	1.4	8.4	4.1
1인당 GDP	달러	20,816	21,163	22,063	25,192	27,098
CPI 상승율	%	1.0	-0.4	0.5	1.7	1.6
(상품)수출	십억 달러	122.5	126.0	145.1	180.8	200.5
(상품)수입	"	109.7	110.2	120.9	154.6	175.9
경상수지/GDP	%	16.7	16.8	24.9	21.2	28.3
평균환율(싱가포르달러/달러)		1.79	1.79	1.74	1.69	1.63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75.4	82.0	95.7	112.8	113.0

자료: GlobalInsight

■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교역·물류 중심지로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였다.

- 협소한 국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이후 연평균 8% 수준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1965년 당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12 달리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20,000달리를 돌파하였고 2004년 현재 1인당 GDP는 25,192달리에 이르게 되었다.

■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수출지향적 공업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 및 석유화학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였다.
- 1990년대에는 국제적인 물류·교역거점으로서 국제금융시장 활성화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지역총괄본부로서 역할이 제고되면서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성장하게 되었다.
- 정부주도하에 경쟁력 강화와 경제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미국, 홍콩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서비스와 전자산업이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 그 중 서비스업의 경우 총 GDP의 61.7%를 점유(2004년 기준)하고 있을 정



싱가포르 전경

도로 중요하며,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수송·통신업이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현재 세계 2위의 무역항, 세계 5위의 국제금융센터 및 세계 4대 외화시장,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나.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

■ 싱가포르는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4대 외화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라 할 수 있다.

- ASEAN의 일원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세계 최대의 해상교역로인 말라카해협을 끼는 지리적 이점,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지경학적 위치 등을 활용하여 동남아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 싱가포르에는 현재 6,000여 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은 싱가포르를 동남아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2위의 자유무역항

■ 싱가포르는 양호한 물류하부구조를 갖추고 있고, 특히 효율적인 시설, 운영정보시스템 및 제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화물이동의 주항로(trunk route)상에 위치하여 해운 및 항공연계성이 뛰어난 물류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또한 싱가포르는 행정, 조세 및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경영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는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 및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며, 세계의 주요 화주 및 물류업체들은 이러한 여건의 활용을 위하여 싱가포르에 지역본부 및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싱가포르

내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물류산업의 이러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2004년 현재 컨테이너 화물처리실적이 2,060만TEU를 기록해 2,193만 TEU의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무역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 세계 주요 항만의 2004년 컨테이너 물동량(추정)

(단위: 만 TEU, %)

순위	항만	2004 실적(추정)		2003 실적		2002 순위
		물동량	증가율	물동량	순위	
1	홍콩	2,193	7.3	2,045	1	1
2	싱가포르	2,060	13.8	1,810	2	2
3	상하이	1,456	29.0	1,128	3	4
4	선전	1,365	28.6	1,061	4	6
5	부산	1,149	10.4	1,041	5	3

자료 :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및 세계 4대 외환시장

■ 싱가포르는 당초 동남아지역의 교역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금융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한 후 동남아의 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먼저 국내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 대출자, 무역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금융제도 및 시설을 구축코자 노력하였다.
- 싱가포르는 또 자국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자유화와 외환규제 철폐 등 적극적인 대외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 정치적 안정, 견실한 경제성장,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배경으로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 외국은행 유치 강화, 은행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의 결과 금융산업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 싱가포르는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기초경제여건의 견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풍부한 외환보유고, 재정수지 흑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리적 이점과 관련 산업의 발달 등으로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 4대 외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4월의 외환거래규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4대이자 아시아에서는 도쿄 다음으로 큰 2위의 외환센터(foreign exchange centre)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3년마다 실시되는 BIS의 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 외환시장의 4월 일일거래규모는 약 1,250억 달러로 3년 전 대비 24% 증가하였다.
- 싱가포르는 또 장외시장(OTC)의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 일일거래 규모가 3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70억 달러를 기록, 세계에서 12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OTC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

■1980년대 중반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비교우위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해운, 항공운송, 통신 등과 국내 및 해외시장을 향한 비즈니스서비스를 집중 육성하였다.

- 즉 싱가포르는 자국을 금융, 운수, 통신 등 제반 비즈니스서비스 기능과 제조업부문을 통합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제품개발, 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와 자금관리기능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지역총괄본부(RHQ)로 이용하려는 다국적기업 들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한편, 항만, 공항, 창고,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부품조달업무를 집중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국제조달사무소(IPO)로서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등 국제비즈니스센터 육성정책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 1990년대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정책을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부문의 발전에 두고, 국제비즈니스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비지니스 거점화를 위한 'International Business Hub 2000', 인근 국가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Regionalization 200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된 것이다.

다. 동아시아의 FTA Hub

■ 싱가포르는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 경제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Hub로 자리잡고 있다.

- 싱가포르는 2000년 9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6월에는 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와의 4국간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 싱가포르는 또 캐나다, 멕시코, 카타르 등과는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며, 추가로 바레인, 이집트, 폐루, 스리랑카, 쿠웨이트 등과는 FTA를 추진키로 공식 합의하였다.
- 이외에도 ASEAN 회원국으로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ASEAN과의 FTA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다.

■ 싱가포르가 이처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국제무역중계지라는 자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국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3. 싱가포르의 FTA 체결 및 협상추진 현황(2005년 6월 현재)

기체결 국가	협상 중인 국가	추진합의 국가
뉴질랜드		
일 본		바레인
호 주		이집트
미 국	캐나다	페 르
요르단	인 도	스리랑카
EFTA ¹⁾	멕시코	파나마
TPS EP ²⁾	카타르	쿠웨이트
인 도		UAE
한 국		

주 : 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됨.

2)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4국간 FTA를 의미함.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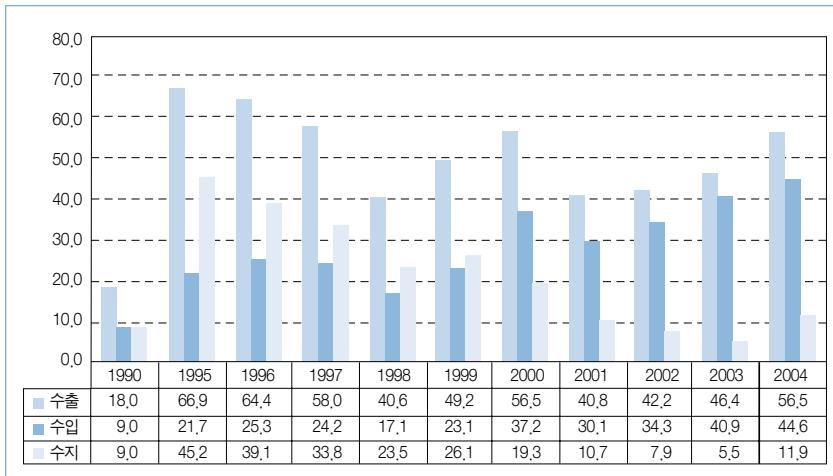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가. 한·싱가포르 교역 현황

- 싱가포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나라의 13~14위 교역대상국이었으나, 1998년 이후 우리의 10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부분의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한국의 7대 수출대상국, 11대 수입대상국(2004)이고, 한국은 싱가포르의 9대 수출대상국, 8대 수입대상국(2004)이다.

표 III-4. 한국의對싱가포르 수출입 추이(1995~2004년)

(단위 : 억 달러)



자료 : KOTIS

- 2000년 93.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던 양국간 교역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수입 모두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의 경우 양국간 교역은 1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 2004년의 교역은 10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축소되어오던 우리의 무역수지 역시 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MTI 4단위 기준)은 집적회로반도체, 무선전화기, 경유, 선박, 승용차, 휘발유, 개별소자반도체,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부품 등이다.

- 이 중 집적회로반도체 등 5대 품목은 **對싱가포르 수출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MTI 4단위 기준)은 집적회로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보조기억장치, 전산기록매체, 컴퓨터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 집적회로반도체 등 5대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수출과 비슷한 6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5. 한국의 **對싱가포르 품목별 수출입구조(2004년 MTI 4단위 기준)**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백만 달러)	품 목	금액 (백만 달러)
1	집적회로반도체	2,496.2	집적회로반도체	2,259.3
2	무선전화기	506.0	개별소자반도체	132.2
3	경유	252.0	보조기억장치	129.0
4	선박	152.1	전산기록매체	113.7
5	승용차	141.7	컴퓨터부품	111.0
6	휘발유	103.9	컴퓨터	110.7
7	개별소자반도체	84.5	소프트웨어	90.9
8	합성수지	71.7	기타 정밀화학제품	87.8
9	무선통신기기부품	70.3	석유화학 중간원료	81.3
10	기초유분	68.2	합성수지	70.5
기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냉연강	1,706.9	용접기, 나프타, 기타석유제품,	1,274.1
타	판, 컴퓨터 부품 등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	
총수출액		5,653.5	총수입액	4,460.5

자료 : KOTIS

나. 한·싱가포르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对싱가포르 투자는 싱가포르의 중계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무역업, 발달된 전자산업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 통신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표 III-6. 한국의 对싱가포르 투자 현황(신고기준, 2005년 5월)

(단위 : 건,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	누계 (1962-2005. 4)
건 수	3	10	20	16	13	14	16	6	197
금 액	291.0	78.2	209.8	32.5	50.4	202.8	144.3	71.8	1,246.6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숙박 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 산업	기타
건 수	4	38	9	85	17	2	2	1	32	6	1
금 액	1.2	217.3	21.0	670.6	20.8	146.4	0.06	1.7	66.8	101.9	0.05

자료 :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 東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활발한 싱가포르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는 2005년 3월 현재 누계기준(신고기준)으로 553건, 33.0억 달러를 기록, 금액기준으로는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보다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2005년 3월)

(단위 : 건,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	누계 (1962-2005, 3)
건 수	26	46	82	60	48	45	76	21	553
금 액	1,183.8	414	304.2	205.4	146.2	235.9	376.0	176.7	3,298.8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숙박 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 산업	기타
건 수	5	166	8	190	37	7	21	6	91	19	3
금 액	0.5	1,659.3	272.2	532.7	311.9	75.9	87.8	6.2	93.9	138.7	119.3

자료 :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전화: 02)2100-8114 FAX: 02)2100-8096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060 FAX: 02)3460-1044
<http://www.kiep.go.kr>